소유권이전등기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 [1심]	사건유형	공유재산
원 고	□□□(선정당사자)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결과	[1심]2022. 1. 25. 원고패	비 고	
사건개요	❍ 원고들은 부평구 산곡동 산▲▲▲-▲▲ 임야 825㎡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와 접해있는 이 사건 토지(인천○○초 학교용지 일부, 부평구 산곡동 △△-1 토지 14㎡)를 본인들이 2001.7.26. 이전부터 일단의 전으로 이용해왔는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판단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하더라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관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3.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 소유자인 □□□ 등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